

##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10. 15. 양순경의원 외 2인  
나. 회부일자 : 2008. 10. 15.  
다. 상정일자 : 2008. 10. 21.(제15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양순경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직위 호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제53조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- 제65조제3항 중 “간사”를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상학)

-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어사전상 부위원장은 「위원장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」으로 총칭되어 지방자치법상 위배사항은 아니며, 타 자치단체에서도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.

### 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## 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## 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## 7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## 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